

개정된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정 1988. 2. 15 고시 제88-13호
 개정 1989. 2. 10 고시 제89-4호
 개정 1991. 7. 4 고시 제91-39호
 개정 1991. 9. 27 고시 제91-57호
 개정 1994. 10. 21 고시 제94-45호
 개정 1995. 2. 23 고시 제95-6호
 개정 1996. 10. 22 고시 제96-36호
 개정 1997. 12. 23 고시 제97-4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서 규정한 특수 및 기타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등에 의한다.

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의 의무 등)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사용내역 중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목적의 사용방지) 발주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의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 ① 사업주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횡수 및 수수료) ①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 횡수는 별표 4와 같으며,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규칙 별표 6의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

- 4회에 1회 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 기술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 총액에 별표 4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노동부고시 제95-3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지도 업무가 개시된 공사(공사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실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의 지도횡수는 당해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고시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대상액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 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주 : 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2. 별표 1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별표 1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별표 2

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겸직 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유자격 안전관리자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 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 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 	안전관리비 총액의 4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p>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해체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p>○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굴착작업 - 거푸집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외의 인건비는 제외 <p>○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p> <p>※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의 인건비는 제외</p>	
2. 안전시설비 등	<p>○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안전난간 - 추락방지용 방망 - 안전대걸이용 로우프 - 개구부 덮개 	<p>안전관리비 총액의 50% 이하</p>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부위 보호덮개 - 현장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웬스, 가설 울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 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호선반 - 낙하물방지망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체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내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웬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울러기, 승강기 등의 비상정지장치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권과방지장치 - 크레인, 승강기, 곤도라, 리프트 등의 과부하 방지장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가공용 등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관 및 접지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비용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 철근, 파이프, 크래프 등 돌출부에 찰림 방지를 위한 캡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 적용사항 제외(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p>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p>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p>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 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멍조끼, 튜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시선, 구멍정 등은 제외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조임대(각반) 	
<p>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휴대용에 한함)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 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 	<p>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p>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유지비(차량구입비 제외)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 교육 - 특별안전교육(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 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 교육교재, 교육용 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안전관리비 총액의 30% 이하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 안전교육장 책·결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외의 냉난방 제외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견학 포함)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지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p>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강진단중 의료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신규채용시 신체검사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취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p>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p>
<p>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p>안전관리비 총액의 20% 이하</p>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공정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 이상 100%
사용기준	30% 이상	50% 이상	70% 이상	공정율 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기술지도 수수료 요율 및 지도횟수 기준

공사금액 \ 구 분	수수료 요율(%)	지도 횟수 기준
3억원 미만	15.0	-(4)
3~5억원 미만	14.0	7(5)
5~10억원 미만	7.4	8(7)
10~15억원 미만	7.2	9(8)
15~20억원 미만	7.0	10(9)
20~30억원 미만	6.8	11(10)
30~40억원 미만	6.6	12(11)
40~50억원 미만	6.4	15(14)
50~60억원 미만	6.2	17(16)
60~70억원 미만	6.0	19(18)
70~80억원 미만	5.8	20(19)
80~90억원 미만	5.5	21(20)
90~100억원 미만	5.0	22(22)

- 주) 1.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수수료 요율을 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2. 지도횟수기준의 ()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한함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사명	
소재지		대표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주자		누계공정율	%
계상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기준 금액	원 (안전관리비 × 공정율)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내역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제출자 직책 성명 (인)

(뒷면)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